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신생아 가구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입주자 모집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생아 가구 정의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유형을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7조의4)
- 나. 입주자 모집 시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입주 순위를 조정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함 (안 제7조의5)
- 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입주자가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 재계약 허용하고자 함(안 제13조)
- 라.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중 입주 중 혼인한 입주자의 재계약 관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 마.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의 경우 기존 입주자격에 맞추어 4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 바. 신생아 가구 1순위 자격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자격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전화 044-201-4479, 4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